

『2021년 폐광지역 주민창업기업 지원사업』

‘청년창업기업’ 추가모집 공고

강원도 폐광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제4조에 따라 폐광지역 주민의 경제 자립 및 소득 증대를 위한 2021년도 폐광지역 주민창업기업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추가 공모하오니 관심 있는 지역주민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.

2021년 5월 20일

강원도경제진흥원장

1 사업개요

가. 사업명 : 2021년 폐광지역 주민창업기업 지원사업

나. 사업기간 : 2021. 5월 ~ 12월

다. 모집기간 : 2021. 5. 21.(금) ~ 6. 3.(목), 18시까지

라. 지원대상 : 청년창업 5개 기업 지원 * 공고일 기준 만 39세 이하

《 아래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법인 》

- 폐광지역(태백, 삼척, 영월, 정선) 내 지역주민 5명 이상이 출자한 법인
 - ※ 출자자 5명 중 진흥지구 내 주민 50% 이상
 - ※ 폐광지역 주민은 사업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폐광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
- 법인사무소 또는 공장 등록지가 폐광지역진흥지구 내에 있는 법인
- 신규 기업부터 최대 출자자 1인의 지분이 30% 이하이며, 특정 1인과 그 가족(배우자와 직계존비속) 지분의 합이 50% 이하여야 함.

마. 사업장 소재지 확인 (폐광지역진흥지구,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 2019-23호)

시·군	읍·면·동	비고
태백시	황지동, 장성동, 금천동 일부, 철암동 일부, 문곡동 일부, 동점동 일부, 소도동 일부, 혈동 일부, 화전동, 적각동, 창죽동, 통동 일부, 백산동, 상사미동 일부	사업 신청 시 출자자 및 법인(공장) 소재지 확인必
삼척시	도계읍 : 고사리, 늑구리 일부, 마교리, 도계리, 상덕리, 황조리, 전두리, 흥전리 일부, 심포리 일부, 구사리, 신리 일부	
영월군	영월읍 : 영흥리 일부, 하송리 일부, 덕포리 일부, 방절리 일부, 정양리 일부, 삼옥리 일부, 거운리 일부 중동면 : 화원리 일부, 녹전리 일부, 석항리 일부, 연상리 일부 김삿갓면 : 진별리 일부, 대야리 일부, 예밀리 일부, 주문리 일부, 옥동리 일부, 외룡리 일부, 내리 일부 북면 : 문곡리 일부, 마차리 일부 남면 : 북쌍리 일부 한반도면 : 옹정리 일부, 신천리 일부 상동읍 : 덕구리 일부, 내덕리 일부, 구래리 일부, 천평리 일부	
정선군	고한읍 사북읍 : 사북리, 직전리 일부 신동읍 : 조동리 일부, 방제리 일부, 예미리 일부 남면 : 무릉리 일부, 문곡리 일부 정선읍 : 봉양리 일부, 애산리 일부, 신월리 일부, 여탄리 일부, 덕우리 일부, 회동리 일부, 덕송리 일부, 북실리 일부 여량면 : 여량리 일부, 구절리 일부 북평면 : 나전리 일부, 북평리 일부 화암면 : 화암리 일부, 몰운리 일부	

○ 폐광지역진흥지구 확인 방법

- 토지이음(www.eum.go.kr) → 토지이용계획 주소 열람 → 지정 여부 확인

2 지원내용 및 유의사항

가. 지원금액 : 기업당 50백만원 * 자부담 : 지원금액의 20%

나. 지원기간 : 최대 3년 * 선정된 해를 포함하며 매년 심사 후 지원

다. 지원내용

○ 사업화 자금 지원

항목	지원내용	비고
마케팅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◆ 지원 대상 : 상품·브랜드 개발, 인터넷·언론매체 광고, 홍보물 제작, 상표·특허 등록 등 ◆ 지원 금액 : 예산 범위 내 사용 * 부가가치세 자부담 사용 	
물건구입비 (시설투자비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◆ 지원 대상 : 사업 수행에 필요한 물품(기계·장치에 한함) 등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※ 기계·장치 : 제품의 제조·가공·보관 등에 사용되는 고정된 기계류와 장치를 말함. 차량, 중기 등과 같은 이동형 기계 장치는 제외 ※ 사무기기(컴퓨터, 복합기), 사무용 가구(의자, 책상), 백색가전 등은 <u>보조금 및 자부담 외의 재원으로 지출</u> * 업종의 성격상 적합한 시설투자일 경우 가능 ◆ 지원 금액 : 예산 범위 내 사용 * 부가가치세 자부담 사용 	
공사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◆ 지원 대상 : 사업 수행 시 필요한 공사(용역 포함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※ <u>인건비 성격의 지출 제외</u> ◆ 지원 금액 : 예산 범위 내 사용 * 부가가치세 자부담 사용 	
재료구입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◆ 지원 대상 :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재료(가공용 재료, 농수산물 등) ◆ 지원 금액 : 3백만원 이하 사용(자부담 지출 시 제한 없음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부가가치세 자부담 사용 	
교육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◆ 지원 대상 : 외부 전문기관 참석 및 외부 전문 강사를 초청하여 교육을 받는 비용 ◆ 지원 금액 : 예산 범위 내 사용 * 부가가치세 자부담 사용 	

○ 창업화 컨설팅

- 창업아카데미, 기술·경영 컨설팅 지원, 우수기업 벤치마킹(현장 지원) 등

라. 유의사항 및 신청 제외 대상

- 2021년 이전에 선정된 기업도 사업 신청을 하여 선정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후 선정되어야 지원이 가능하며, **공고일 기준 법인등기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는 신청 불가**
- 타 행정기관(국가지방자치단체) 등에서 동일 또는 유사 성격의 보조금을 지원받거나 지원받을 예정인 경우 제외
- 과거 보조사업과 관련된 부당·불법 행위로 타 기관으로부터 제재를 받은 단체
- 과거 본 지원사업 선정 후 단체의 귀책사유로 사업을 포기한 단체
- 대표자가 이해보증보험 가입 자격을 상실한 신용거래 불량자인 단체

3 심사 및 선정 방법

가. 선정 절차

신청서 접수 ⇒ 서류심사 ⇒ 발표평가 ⇒ 현장점검 ⇒ 최종선정

- 서류심사 : 신청 기업이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적격 여부 검토
- 발표평가 : 적격 여부 통과 기업을 대상으로 진행
 - 평가방법 : 주관기관 사업담당자 및 외부 전문위원을 통한 창업기업 대표자 사업계획서 발표(PPT) 및 질의응답 등 대면평가 진행
 - (신규기업) : 사업기반 및 경영 역량, 사업계획의 구체성, 사업 아이템의 차별성 및 독창성, 재정의 건전성, 지출 계획의 적절성 등
 - (계속기업) : 매출 실적 및 고용 현황, 지역사회의 공헌도, 사업의 신장성, 수익 창출 가능성, 지역자원의 연계 및 활용 등 지역 기여도 중점
- 현장심사 : 기업 현장 방문을 통해 사업계획서 내용과 기업 현장 상이 점 여부 확인 * 사업계획서에 기록되어 있는 사업장 소재지 방문
- 선정결과 : 강원도경제진흥원 홈페이지 공지, 선정기업 개별 통보

4 신청 및 접수 방법

- 가. 접수기간 : 2021. 5. 21.(금) ~ 6. 3.(목), 09:00 ~ 18:00까지
- 나. 제출서류 : 지원사업 신청서, 법인(단체) 소개서, 사업계획서
- 계속기업의 경우 전년도 추진실적 관련 증빙 및 매출 재무제표 제출
- 다. 접수처 : 해당 시·군 담당 부서

시·군	부서명	연락처	비고
태백시	일자리경제과	033-550-2427	
삼척시	자원개발과	033-570-4053	
영월군	경제고용과	033-370-2447	
정선군	전략산업과	033-560-2154	

- 라. 접수방법 : 해당 시·군 방문 또는 등기우편 * 이메일 접수 불가
- 우편접수는 접수 마감일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
 - ※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가급적 등기우편 활용
- 마. 신청서 : 강원도경제진흥원 홈페이지 공고/고시에서 다운

5 보조금 교부, 정산 및 기타사항

- 가. 보조금 교부 : 해당 시·군 담당 부서
- 선정 후 교부 기간 내 신청하면 검토 후 교부
 - 사업계획에 따라 금액 교부 가능 (예산 계획 변경 신청은 1회로 한정)
 - 보조금 신청 시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아 제출
- 나. 보조금 정산 : 사업 종료 후 즉시 정산서와 관련 증거서류 제출
- 다. 실태조사 및 점검
- 연 1회 이상 컨설팅 및 사업 운영실태 조사 실시
 - 사업 종료 후 사업 전반에 대한 성과 평가 진행

라. 기타사항

- 허위사실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조치되며 보조금은 환수 조치함.
- 사업 계획(사업내용, 예산 계획)을 변경할 때에는 강원도지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, 사전 승인 없이 사업 계획(사업내용, 예산 계획)을 변경하여 집행한 경우에는 사업의 정지 또는 취소를 할 수 있고, 취소를 명한 경우에는 보조금을 반납하여야 함.
- 선정 후 사업 추진이 부진하거나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지 못한다고 판단된 경우 사업의 정지 또는 취소할 수 있고, 취소된 경우에는 보조금을 반납하여야 함.
- 제출한 모든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.

6 사업 문의처

가. 사업총괄 : 강원도 자원개발과(☎033-249-2760)

나. 사업추진 : 강원도경제진흥원 지역발전본부 자원개발팀

- 지원사업 담당자 (☎033-749-3381, ✉ gwep21@naver.com)

다. 해당 시·군 담당 부서

시·군	부서명	연락처	비고
태백시	일자리경제과	033-550-2427	
삼척시	자원개발과	033-570-4053	
영월군	경제고용과	033-370-2447	
정선군	전략산업과	033-560-2154	